

## 목포시시세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55
----------	-----

제출년월일 : 2001. 4. .

제 출 자 : 목 포 시 장

### 1. 제안이유

새차와 헌차에 대한 자동차세 부담을 차별화 함으로써 세부담의 형평을 기하고, 벼와 특수작물만을 과세대상으로 과세해오던 농지세의 과세대상에 국세인 소득세 과세대상을 일부 포함시켜 농업소득세로 개편하고, 현행 지방세제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골자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최초 등록후 3년이 되는해부터 1년당 그 경감율을 5퍼센트로 하여 50퍼센트를 상한으로 그 경과된 연수만큼 경감하는 한편, 자동차세의 차 등과세로 인한 감소재원의 확보를 위하여 주행세율을 교통세액의 1,000분의 32에서 1,000분의115로 인상함(안제37조, 제40조의3)
- 농지세 세목을 농업소득세로 하고 한국표준산업 분류상의 농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의 재배로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앞으로도 존치 실익이 없는 중간예납제를 폐지함(안제45 ~ 제51조)
- 세법 시행령에 의하여 조정된 담배소비세의 현행 세율을 조례에 반영하되 제1종 궤련에 대하여 그 세율을 1갑당 460원에서 510원으로 인상(안 제55조)
- 세무공무원이 소액지방세로 수납할 수 있는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을 300,000원에서 500,000원으로 세정변화에 맞게 상향조정 함(안 제11조)

### 3. 개정조례안 : 별 첨

### 4. 신구조문 대비표 : 별 첨

### 5. 관련법령

- 지방세법제 196조의5, 196조의17, 197~214조, 229조

### 6. 예산사항 : 해당없음.

### 7.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8. 사전예고

- 기 간 : 2000. 12. 29. ~ 2001. 1. 18. (20일 이상)
- 결 과 : 의견없음.

9. 사전협의 (승인)

- 전남재정 13420- 1803 (2000. 11. 8 ) 지방세정 당면업무 지시사항 통보
- 전남재정 13400- 1834 (2000. 11. 14) 시·군세 조례안 수정자료 통보

10. 기타 참고사항

- 목포시조례·규칙심의회 원안가결 심의

목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목포시시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조제2항제5호의 "농지세", 제18조제2항중 "농지세", 제4절의 제목 "농지세" 를 각각 "농업소득세" 로 한다.

제11조중 "300,000원"을 "500,000원" 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중 "120일"을 "4월"로, "30일"을 "1월"로 한다.

제37조제1항 제1호의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중 영 제146조의3제2항에서 정하는 차령이 3년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자동차 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

$$\text{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 - (A/2 \times 5/100)(n-2)$$

A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동차의 연세액

n : 차령( $2 \leq n \leq 12$ )

제38조제1항중 “분할하여” 를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37조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각 기본세액)을”으로 “4분의 1의 금액” 을 “4분의 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본세액의 2분의 1의 금액)” 으로 한다.

제40조의3본문을 다음과 같이하여 제1항으로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주행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115 로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법 제196조의 1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으로 조정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세율을 주행세의 세율로 한다.

제41조 내지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납세의무자) ①농업소득이 있는 자는 그 작물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시에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2인 이상이 공동으로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업소득금액에 따라 각각 그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하여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출자한 농민이 그 지분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같은 세대안에서 동거하는 수인의 가족이 공동으로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된 납세의무자의 소득으로 보아 그 주된 납세의무자가 당해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2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신청) 법 제2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를 비과세 받고자하는자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농업소득금액, 비과세 받고자하는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3조(개간·간척 등으로 인한 비과세신청) 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인가 또는 허가연월일, 사실상준공연월일, 영 농개시일, 피해연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비과세로 된 날 또는 피해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과세기간) ①농업소득세는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간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농업소득세를 부과한다.

③납세의무자가 주소를 국외로 이전함으로써 인하여 출국일부터 당해 연도의 12월 31일까지 농업소득이 생기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농업소득세를 부과한다.

제45조(과세표준) ①농업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이하 “과세기간”이라 한다)중에 재배한 작물별 수입금액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에서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비과세소득 및 감면소득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수입금액은 과세기간중에 수입되었거나 수입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수입금액의 범위·계산방법·귀속년도 또는 확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156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③필요경비는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투하된 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며, 필요경비의 종류·계산방법·귀속년도 또는 확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159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④농업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농업소득금액에서 연560만원을 기초공제 한다. 다만,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월수 (15일 이상의 일수는 1월로 본다)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제46조(세율)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농업소득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과세표준)	(세 율)	(개정 2000. 6. 5 조2020 )
400만원이하	과세표준액의100분의3	
400만원초과	12만원 + 400만원초과	
1천만원이하	금액의 100분의10	
1천만원초과	72만원 + 1천만원초과	
4천만원이하	금액의 100분의20	

4천만원초과	672만원 + 4천만원초과
8천만원이하	금액의 100분의30
8천만원초과	1천872만원 + 8천만원초과
	금액의 100분의40

제47조(농지 및 재배시설의 변경신고 등) ①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농지 또는 작물을 재배하는 시설의 소유권의 변경 기타 이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영 제167조에서 정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물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시장이 변동 사실을 확인하였거나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자 등의 대리 신고에 의하여 농업소득세 과세대장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사실을 즉시 농업소득세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8조를 삭제한다

제49조 내지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9조(수시부과) 수시로 부과하는 농업소득세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부과기간으로 하여 영 제166조의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50조(신고와 납부) ①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영 제164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중에 농업소득금액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206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법 제2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1항의 기간내에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51조(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설치) ①수입금액·농업소득금액 그 밖에 농업소득세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둔다.

②농업소득조사위원회는 당해 시 안의 납세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 직무상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③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농업소득조사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5조제1항 제1호 가목중 “460원”을 “510원”으로 한다.

제72조제2항 제6호중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개발예정구역조성사업”을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한다

제73조제2항중 “영 제194조의14에서 정하는”을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영 제194조의14에서 정하는”으로 한다.

조례 제2020호 부칙 제2항본문중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승용차로 등록된”을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2001년1월1일부터 승용차에 해당되는”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2000년”을 “2001년”으로 하고,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의 종류에”를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로 한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 제1항제1호의2 및 제4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2001년 제2기분 자동차세액 산출적용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2001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액은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7조제1항제1호의2의 산식에 당해 차량의 차령을 적용한 값으로 한다.
- ③(주행세율의 적용 및 조정에 관한 특례) 제4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④(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현행	개정
<p>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부터 각각 30일)내에 관할 시장에게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p> <p>제37조(과세표준과 세율) ①자동차의 1대당 연세액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1.(생략)</p> <p><u>1의2.&lt;신설&gt;</u></p>	<p>----- ----- --1월-- ----- (단서 현행과 같음)</p> <p>제37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 -----</p> <p>1.(현행과 같음)</p> <p><u>1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중 영 제146조의3제2항에서 정하는 차령이 3년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자동차 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한다. 이</u></p> <p><u>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u></p> <p><u>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math>A/2 - (A/2 \times 5/100)(n-2)</math></u></p> <p><u>A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동차의 연세액</u></p> <p><u>n : 차령(<math>2 \leq n \leq 12</math>)</u></p>



현행	개정
<p><u>하게 함으로 인하여 소득"이라 한다)</u> <u>이 있는 자는 농지업은 소득 (이하</u> <u>이절에서 "농지세를 납부할 의무를</u> <u>진다.</u></p> <p><u>②2인 이상이 공동으로 농지소득을</u> <u>얻은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u> <u>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u> <u>배될 농지소득금액에 따라</u> <u>각각 농지세의 납세의무를 진다.</u></p> <p><u>③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u> <u>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지소득은 출</u> <u>자한 농민이 그 지분에 의하여 분배</u> <u>되었거나 분배될 농지소득금액에 따</u> <u>라 각각 농지세의 납부의무를 진다.</u></p> <p><u>④같은 세대내에서 동거하는 수인</u> <u>의 가족이 공동으로 농지소득을 얻는</u> <u>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u> <u>주된 납세의무자의 소득 으로 보아</u> <u>주된 납세의무자가 농지세의 납세의</u> <u>무를 진다.</u></p> <p><u>제42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신청)</u> <u>법 제2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u> <u>를 비과세 받고자하는자는 시행규칙</u> <u>제83조제1항의 규정에</u> <u>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u> <u>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u></p>	<p><u>할하는 시에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u> <u>야 한다.</u></p> <p><u>②2인 이상이 공동으로 농업소득을</u> <u>얻은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u> <u>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u> <u>배될 농업소득금액에 따라</u> <u>각각 그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u> <u>다.</u></p> <p><u>③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u> <u>법인을 구성하여 농업소득을 얻은 경</u> <u>우에는 출자한 농민이 그 지분에 의</u> <u>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업소득</u> <u>세를 납부하여야 한다.</u></p> <p><u>④같은 세대안에서 동거하는 수인의</u> <u>가족이 공동으로 농업소득을얻은 경</u> <u>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u> <u>하고 주된 납세의무자의 소득으로 보</u> <u>아 그 주된 납세의무자가 당해 농업</u> <u>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u></p> <p><u>제42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신청)</u> <u>법제2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u> <u>세를 비과세 받고자하는자는 시행규</u> <u>칙 제83조제1항의 규</u> <u>정에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u> <u>의 소재지,지번,지목,용도,농업</u></p>

현행	개정
<p>농지소득금액, 비과세 받고자하는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p>제43조(개간·간척 등으로 인한 비과세 신청) 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인가 또는 허가연월일, 사실상준공연월일, 영농개시일, 피해연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비과세로 된 날 또는 피해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44조(과세기간) ①농지세는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농지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p> <p>②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농지소득에 대하여 농지세를 부과한다.</p> <p>③납세의무자가 주소를 국외로 이전함으로써 인하여 출국일부터 당해 연도의 12월 31일까지 농지소득이 생기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p>	<p>소득금액, 비과세 받고자하는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p>제43조(개간·간척 등으로 인한 비과세 신청) 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인가 또는 허가연월일, 사실상준공연월일, 영농개시일, 피해연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비과세로 된 날 또는 피해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44조(과세기간) ①농업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간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p> <p>②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농업소득세를 부과한다.</p> <p>③납세의무자가 주소를 국외로 이전함으로써 인하여 출국일부터 당해 연도의 12월 31일까지 농업소득이 생기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p>

현행	개정
<p>연도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의 농지소득에 대하여 농지세를 부과한다.</p> <p>제45조(과세표준) ①농지세의 과세표준은 농지소득 금액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비과세소득 및 감면소득과 법 제209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p> <p>②2이상의 시에 있는 농지에서 생기는 농지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에서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비과세소득 및 감면소득과 법 제209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p> <p>③&lt;신 설&gt;</p>	<p>해 연도의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농업소득세를 부과한다.</p> <p>제45조(과세표준)①농업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이하 “과세기간”이라 한다)중에 재배한 작물별 수입금액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에서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비과세소득 및 감면소득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p> <p>②수입금액은 과세기간중에 수입되었거나 수입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수입금액의 범위·계산방법·귀속년도 또는 확정시기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156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p> <p>③필요경비는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투하된 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며, 필요경비의 종류·계산방법·귀속년도 또는확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159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p>

현행	개정										
<p>④&lt;신 설&gt;</p> <p>제46조(세율) 농지세의 세액은 과세기간중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세 율)(개정 2000.6.5 조2020)</p> <table border="0"> <tr> <td>400만원이하</td> <td>과세표준액의100분의3</td> </tr> <tr> <td>400만원초과 1천만원이하</td> <td>12만원 + 400만원초과 금액의 100분의10</td> </tr> <tr> <td>1천만원초과 4천만원이하</td> <td>72만원 + 1천만원초과 금액의 100분의20</td> </tr> <tr> <td>4천만원초과 8천만원이하</td> <td>672만원 + 4천만원초과 금액의 100분의30</td> </tr> <tr> <td>8천만원초과</td> <td>1천872만원 +8천만원초과 금액의 100분의40</td> </tr> </table> <p>제47조(농지의 변동신고 등) ①농지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재·지번·면적·작물의 종류와 변동사유 발생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p>	400만원이하	과세표준액의100분의3	400만원초과 1천만원이하	12만원 + 400만원초과 금액의 100분의10	1천만원초과 4천만원이하	72만원 + 1천만원초과 금액의 100분의20	4천만원초과 8천만원이하	672만원 + 4천만원초과 금액의 100분의30	8천만원초과	1천872만원 +8천만원초과 금액의 100분의40	<p>④농업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농업소득금액에서 연 560만원을 기초공제한다. 다만,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월수(15일 이상의 일수는 1월로 본다)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p> <p>제46조(세율) 농업소득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p> <p>(현행과 같음)</p> <p>제47조(농지 및 재배시설의 변경신고 등) ①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농지 또는 작물을 재배하는시설의 소유권의 변경 기타 이와 사한 사항으로서 영 제167조에서 정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p>
400만원이하	과세표준액의100분의3										
400만원초과 1천만원이하	12만원 + 400만원초과 금액의 100분의10										
1천만원초과 4천만원이하	72만원 + 1천만원초과 금액의 100분의20										
4천만원초과 8천만원이하	672만원 + 4천만원초과 금액의 100분의30										
8천만원초과	1천872만원 +8천만원초과 금액의 100분의40										

현행	개정
<p>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농지의 소유자가 변동된 때</li> <li>2. 농지의 경작지가 변동된 때</li> <li>3. 농지가 농지이외의 되거나, 농지이외의 토지가 농지로 된 때</li> <li>4. 과세지가 비과세지로 되거나 비과세지가 과세지로 된 때</li> </ol> <p>②농지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시장이 변동사실을 확인하였거나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자 등의 대리 신고에 의하여 농지세 과세대장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사실을 즉시 농지세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제48조(중간예납)</p> <p>① 영제162조의 규정에서 “연2회 시조례로 정하는 기간” 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기분:1월1일부터 7월31일까지</li> <li>2. 제2기분:8월1일부터11월31일까지</li> </ol> <p>②농지세의 납세의무자는제1항에서 규정한 납기내에 발생한 농지소득을근거로 시장이 산출하여 통지한 농지세액을 다음 기간에 중간예납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기분:8월16일부터8월31일까지</li> </ol>	<p>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물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②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시장이 변동사실을 확인하였거나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자 등의 대리 신고에 의하여 농업소득세 과세대장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사실을 즉시 농업소득세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제48조(중간예납) 삭제</p>

현행	개정
<p>2. 제2기분:12월16일부터12월31일까지</p> <p>제49조(수시부과) 수시로 부과하는 농지세는 중간예납이나 확정신고에 불구하고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부과기간으로 하여 영 제166조의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p> <p>제50조(확정신고와 자진납부) ①농지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당해 과세기간중의 농지소득금액을 확정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13조 제1항의 신고내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농지세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210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항의 기간내에 구청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제214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li> <li>2. 법제217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li> <li>3. 법제21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세액</li> </ol> <p>제51조(농지조사위원회설치 운영 등)</p>	<p>제49조(수시부과) 수시로 부과하는 농업소득세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부과기간으로 하여 영 제166조의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징수방법에의하여 징수한다.</p> <p>제50조(신고와 납부) ①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영 제164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중에 농업소득금액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②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206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법 제2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1항의 기간내에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p> <p>제51조(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설치)</p>

현행	개정
<p>①농지수입금액·농지소득금액 기타 농지세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시에 농지조사위원회를 둔다.</p> <p>②농지조사위원회는 시내의 농지소유자·납세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 직무상 필요한사항을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p> <p>③농지조사위원회의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④농지조사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55조(세율)①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흡연용의 제조담배</p> <p>가. 제1종 쫄연 20개비당 460원</p> <p>다만, 판매가격이 200원(20개비이하인 쫄연은 20개비당 40원</p> <p>제72조(납세의무자)</p> <p>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p> <p>1.~ 5. (생략)</p>	<p>①수입금액·농업소득금액 그 밖에 농업소득세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둔다.</p> <p>②농업소득조사위원회는 당해 시안의 납세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 직무상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p> <p>③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④농업소득조사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기타실비를 지급할수있다.</p> <p>제55조(세율) ①- - - - - .</p> <p>1. - - - - -</p> <p>가. - - - - - 510원</p> <p>- - - - -</p> <p>- - - - -</p> <p>제72조(납세의무자)</p> <p>②- - - - - .</p> <p>- - - - -</p> <p>- - - - -</p> <p>- - - - - .</p> <p>1.~ 5.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
<p>6. <u>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개발예정구역조성사업 및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거나 사업계획 등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u></p>	<p>6. <u>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u> - - - - - -</p>
<p>제73조(과세표준) ② <u>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영 제194조의14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격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u></p>	<p>제73조(과세표준) ②- - - - - - - - - - - - - - - <u>별도 합산 또는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영 제194조의14에서 정하는</u> - - - - - - - - - -</p>
<p>부 칙 (2000. 6. 5.조2020) ②(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u>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등록된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자동차(중형 또는 고급에 해당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u></p>	<p>부 칙 (2000. 6. 5.조 2020) ②(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u>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2001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u> - - - - - - - - - - - - - - -</p>

